

## 치과위생사의 제도와 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김선일 · 전미경<sup>1</sup> · 이선미<sup>2</sup>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및 구강과학연구소 · <sup>1</sup>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 <sup>2</sup>동남보건대학교 치위생과

## Needs of revision of dental hygienist-related medical law

Sun-Il Kim · Mi Kyoung Jun<sup>1</sup> · Sun-Mi Lee<sup>2</sup>

Department of Preventive & Public Oral Health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 <sup>1</sup>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 Public Oral Healt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 <sup>2</sup>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nam Health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un-Mi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nam Health University, 50 Cheoncheon-ro 74-gil, Jangan-gu, Suwon-si, Gyeonggi-do, 16328, Korea, Tel: +82-31-249-6505, Fax: +82-31-249-6500, E-mail: lsm712002@dongnam.ac.kr

Received: 1 July 2016; Revised: 22 August 2016; Accepted: 24 September 2016

###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asic materials required for law revision regarding dental hygienists through perceptions and opinions of legislation amendments.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April 23, 2016.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797 dental hygienists in Seoul and Gyeonggi-do after receiving informed consent from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No. PO1-201602-23-001).

**Results:** Necessity for dental hygienist-related medical law revision accounted for 92.4% and 85.4% of dental hygienists replied that specialized dental hygienist system must be established. The reasons for medical law revision were as follows; roles and education of medical technicians (60.6%), settlement of medical legal problems (48.0%),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29.0%), political negotiations (17.4%), and national consensus (9.5%). The score for 'possible to get legal protection by the system establishment of roles and work scope of dental hygienists' was 4.11 of 5 points.

**Conclusion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job scope of dental hygienist. The revision of dental hygienist-related law will help to enhance the status of dental hygienists as professional medical technicians in the future.

**Key Words:** dental hygienists, medical law, medical technicians law

**색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치과위생사

### 서론

의료법이란 모든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의료인의 종별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의료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법률이

다[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고 한다)은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대통령이 정한 업무와 한정된 의료범위 내에서 의사와 치과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행위 중 일부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의료기사의 종별은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가 있다(이하 “의료기사 등”이라고 한다)[2,3].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치과 의료인력 54,891명 중 31,202명으로 전체 인력의 56.84%

에 달한다[4]. 또한 치과의료기관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치과의료 영역은 물론 전체 보건 영역에서의 통합 건강증진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구강보건인력자원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전망이다[5,6]. 그런데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을 중심에 두고 의료기사는 이를 준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사법 안에서의 업무에 대한 의료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7,8] 2015년 시행된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에 대한 개정으로 치과위생사들의 업무가 일부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행위와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시급한 상황이다[9].

김[7]의 연구결과를 보면, 의료기사법상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속성, 정확성, 접근성과 효율성 등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제도의 취지가 의료인만의 독점적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신속성 및 효율성이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보다 우선하여 고려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10].

또한 이 등[11]과 오 등[12]에 의해 치과위생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제한적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업무 수행에 있어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의료사고와 같은 의료분쟁이 생겨 다양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업무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치과위생사를 위한 법률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 승인(IRB No. POI-201602-23-001)을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서울·경기도 치과위생사 회원 중 상반기 보수교육(2016년 4월 23일)에 참석한 회원 85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회수된 설문 중 자료 처리에 부적합한 설문을 제외한 797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이와 강[10]의 선행연구를 참

고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고, 치위생 분야의 전문가 자문에 의해 내용타당도 검증 후 최종 완성된 설문문항은 총 21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7문항, 의료기사법 관련 4문항(교육이수여부, 내용인지), 의료법 필요관련 4문항, 의료법 개정관련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의료법 개정관련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산정하였다.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료법 개정 관련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80$ 로 나타났다.

### 3.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PASW statistics)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 특성, 의료기사법 인지정도, 의료법 필요에 대한 견해는 빈도와 퍼센트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법 개정 및 전문치과위생사제도 의견에 대해서는  $\chi^2$ 검정을, 의료법 개정에 대한 견해정도는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정 하였다.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5세 이하가 34.1%로 가장 많았으며, 26세-30세 33.8%, 31세-35세 17.6%, 36세-40세 9.0%, 41세 이상 5.5% 순으로 나타났고, 최소 22세에서 최대 58세로 평균연령은 29.1세로 나타났다. 총 경력은 3년 이하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7년-10년 21.7%, 4년-6년 21.2%, 11년-15년 13.3%, 16년 이상 8.0% 순이었으며,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평균경력은 6.4년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 74.3%, 기혼 25.7%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학사 76.3%, 학사 22.2%, 대학원 이상 1.5% 순으로 나타났고, 근무지역은 서울 42.4%, 경기도 57.6%이었으며, 근무지는 대학(종합)병원 6.9%, 치과병원 6.4%, 기타 2.4%, 치과의원 84.3%로 대부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주된 업무로는 진료협조가 44.5%로 가장 높았고, 예방업무 20.1%, 환자관리업무 13.8%, 병원경영관리업무 12.8%, 기타 8.8%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 2. 의료기사법 인지정도

의료기사법 인지정도는 <Table 2>와 같다. 의료기사법 관련 교육이수 여부는 ‘미이수’라고 응답한 경우가 52.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Age(year)	≤25	272(34.1)
	26-30	269(33.8)
	31-35	140(17.6)
	36-40	72(9.0)
	≥41	44(5.5)
Working career	≤3 years	285(35.8)
	4-6 years	169(21.2)
	7-10 years	173(21.7)
	11-15 years	106(13.3)
	≥16 years	64(8.0)
Marital status	Single	205(25.7)
	Married	592(74.3)
Academic background	College	608(76.3)
	University	177(22.2)
	≥Graduate school	12(1.5)
Working area	Seoul	338(42.4)
	Gyeonggi	459(57.6)
Type of work place	College dental hospital	55(6.9)
	Dental hospital	51(6.4)
	Dental clinic	672(84.3)
	Etc.	19(2.4)
Type of duty position	Prevention	160(20.1)
	Patient care	110(13.8)
	Care coordination	355(44.5)
	Hospital Management	102(12.8)
	Etc.	70(8.8)
Total		797(100.0)

Table 2. Recognition of the medical technicians law

Item	Division	N(%)
Have you ever completed the training for medical technicians law?	Yes	368(46.2)
	No	415(52.1)
	Etc.	14( 1.8)
		797(100.0)
Do you know the contents of the medical technicians law?	Don' know	213(27.3)
	Average	439(56.2)
	Know	129(16.5)
	Etc.	781(100.0)
Do you think that the current medical technicians law and the role and task of the dental hygienist is not clear?	Strongly disagree	5( 0.9)
	Disagree	47( 8.8)
	Undecided	207(38.7)
	Agree	210(39.3)
	Strongly agree	66(12.3)
	535(100.0)	
Do you think that the current medical technicians law include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medical legal problems related to dental practices clearly?	Strongly disagree	46( 8.5)
	Disagree	274(50.8)
	Undecided	189(35.1)
	Agree	27( 5.0)
	Strongly agree	3( 0.6)
	539(100.0)	

로 ‘이수’ 한 경우 46.2%보다 높았으며, 의료기사법 내용 인지에 있어서는 ‘보통이다’가 56.2%로 가장 높았고 ‘모른다’ 27.3%, ‘그렇다’ 16.5%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업무내용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의견에는 ‘그렇다 이상’이 51.6%로, 치과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법적 문제의 책임관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그렇지 않다’ 이상이 59.3%로 나타났다.

### 3. 치위생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치위생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는 <Table 3>과 같다.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92.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나라와의 동등한 법적체계 필요여부는 ‘필요하다’ 이상이 66.9%, 전문치과위생사의 제도 마련 필요성 여부는 ‘필요하다’ 이상이 85.4%로 나타났다. 의료법 개정시 촉진요인으로는 ‘의료기사의 역할과 교육’이 60.6%로 가장 높았고, ‘의료법적 문제 해결’ 48.0%, ‘타 단체와의 협조’ 29.0%, ‘정치적 협상’ 17.4%, ‘국민적 합의’ 9.5%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치과위생사의 단합과 치과 의사의 마인드 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위생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는 <Table 4>와 같다. 의료법 개정에서 학력은 전문 학사(93.0%)와 학사(93.1%)는 비슷한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대학원 이상인 경우는 58.3%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근무지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치과병원인 경우가 98.0%로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령, 경력, 결혼여

부, 근무지역, 주된 업무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치과위생사제도에 있어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 4. 치위생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

치위생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Table 5>와 같다. 항목 중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제도화되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가 4.11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 치과위생사의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4.10점, ‘치과위생사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4.08점, ‘치과위생사 업무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4.06점, ‘법으로 치위생전문직의 교육과 실무를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3.99점, ‘치과위생사의 법적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다’ 3.78점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Table 6>과 같다. 연령과 경력에 있어서 ‘치과위생사의 법적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25세 이하이거나 3년 이하의 경력인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모든 점수들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 있어서 학사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여부, 근무지역, 근무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Table 3. Needs of medical law revision

Item	Division	N(%)
Opinion on medical law revision	Not need	37(4.8)
	Need	712(92.5)
	Etc.	21(2.7)
		770(100.0)
Need for equal legal system with other countries	Not need	7( 0.9)
	Don't know	187(24.1)
	Not so bad	63( 8.1)
	Need	381(49.1)
	Very need	138(17.8)
		776(100.0)
Need for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 institution	Not need	6( 0.8)
	Don't know	61( 7.9)
	Not so bad	46( 5.9)
	Need	450(57.9)
	Very need	214(27.5)
		777(100.0)
Promoting factor of medical law revision (Multiple responses)	National consensus	74( 9.5)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227(29.0)
	Political negotiations	136(17.4)
	Settlement of medical legal problems	375(48.0)
	Roles and education of medical technicians	474(60.6)

Table 4. Needs of medical law revision of related with dental hygienists and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 institu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N(%)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Medical law revision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 institution				
		Not need	Need	Etc	Total	No need	Don't know	Not so bad	Need	Very need	Total
Age(year)	≤25	12(4.5)	244(91.4)	11(4.1)	267(100.0)	0(0.0)	19(7.1)	12(4.5)	147(55.1)	89(33.3)	267(100.0)
	26-30	13(5.0)	244(93.1)	5(1.9)	262(100.0)	2(0.8)	22(8.3)	15(5.7)	160(60.6)	65(24.6)	264(100.0)
	31-35	9(6.8)	123(92.5)	1(0.8)	133(100.0)	2(1.5)	11(8.0)	12(8.8)	77(56.2)	35(25.5)	137(100.0)
	36-40	1(1.5)	63(95.5)	2(3.0)	66(100.0)	1(1.5)	5(7.4)	5(7.4)	44(64.7)	13(19.1)	68(100.0)
	≥41	2(4.8)	38(90.5)	2(4.8)	42(100.0)	1(2.4)	4(9.8)	2(4.9)	22(53.7)	12(29.3)	41(100.0)
	$\chi^2$ (p-value*)		7.852(0.448)					15.912(0.459)			
Working career	≤3 years	11(4.0)	255(91.7)	12(4.3)	278(100.0)	0(0.0)	20(7.2)	11(3.9)	157(56.3)	91(32.6)	279(100.0)
	4-6 years	7(4.2)	155(93.4)	4(2.4)	166(100.0)	2(1.2)	14(8.4)	8(4.8)	97(58.1)	46(27.5)	167(100.0)
	7-10 years	10(6.1)	151(92.6)	2(1.2)	163(100.0)	3(1.8)	12(7.1)	17(10.0)	102(60.0)	36(21.2)	170(100.0)
	11-15 years	4(3.8)	100(96.2)	0(0.0)	104(100.0)	0(0.0)	11(10.7)	4(3.9)	64(62.1)	24(23.3)	103(100.0)
	≥16 years	5(8.5)	51(86.4)	3(5.1)	59(100.0)	1(1.7)	4(6.9)	6(10.3)	30(51.7)	17(29.3)	58(100.0)
	$\chi^2$ (p-value*)		11.424(0.179)					24.099(0.087)			
Marital status	Single	8(4.1)	181(93.3)	5(2.6)	194(100.0)	2(1.0)	14(7.1)	14(7.1)	118(59.6)	50(25.3)	198(100.0)
	Married	29(5.0)	531(92.2)	16(2.8)	576(100.0)	4(0.7)	47(8.1)	32(5.5)	332(57.3)	164(28.3)	579(100.0)
		$\chi^2$ (p-value*)		0.291(0.864)					1.630(0.803)		
Academic Background	College	23(3.9)	543(93.0)	18(3.1)	584(100.0)	5(0.8)	48(8.1)	35(5.9)	357(60.5)	145(24.6)	590(100.0)
	University	10(5.7)	162(93.1)	2(1.1)	174(100.0)	1(0.6)	13(7.4)	9(5.1)	86(49.1)	66(37.7)	175(100.0)
	≥ Graduate school	4(33.3)	7(58.3)	1(8.3)	12(100.0)	0(0.0)	0(0.0)	2(16.7)	7(58.3)	3(25.0)	12(100.0)
		$\chi^2$ (p-value*)		26.336(<0.001)					15.288(0.054)		
Working area	Seoul	16(4.9)	302(92.1)	10(3.0)	328(100.0)	3(0.9)	31(9.4)	19(5.8)	179(54.2)	98(29.7)	330(100.0)
	Gyeonggi	21(4.8)	410(92.8)	11(2.5)	442(100.0)	3(0.7)	30(6.7)	27(6.0)	271(60.6)	116(26.0)	447(100.0)
		$\chi^2$ (p-value*)		0.232(0.890)					4.208(0.379)		
Type of work place	College dental hospital	6(11.3)	45(84.9)	2(3.8)	53(100.0)	0(0.0)	4(7.4)	8(14.8)	25(46.3)	17(31.5)	54(100.0)
	Dental hospital	1(2.0)	49(98.0)	0(0.0)	50(100.0)	0(0.0)	4(7.8)	3(5.9)	32(62.7)	12(23.5)	51(100.0)
	Dental clinic	27(4.2)	603(92.9)	19(2.9)	649(100.0)	6(0.9)	49(7.5)	34(5.2)	384(58.8)	180(27.6)	653(100.0)
	Etc.	3(16.7)	15(83.3)	0(0.0)	18(100.0)	0(0.0)	4(21.1)	1(5.3)	9(47.4)	5(26.3)	19(100.0)
	$\chi^2$ (p-value*)		14.166(0.028)					15.794(0.201)			
Type of duty position	Prevention	11(7.1)	138(89.6)	5(3.2)	154(100.0)	1(0.6)	15(9.6)	8(5.1)	102(65.4)	30(19.2)	156(100.0)
	Patient care	4(3.8)	96(92.3)	4(3.8)	104(100.0)	0(0.0)	7(6.4)	10(9.2)	69(63.3)	23(21.1)	109(100.0)
	Care coordination	13(3.7)	329(94.5)	6(1.7)	348(100.0)	3(0.9)	24(6.9)	23(6.6)	185(53.2)	113(32.5)	348(100.0)
	Hospital management	7(7.4)	86(91.5)	1(1.1)	94(100.0)	2(2.1)	7(7.4)	5(5.3)	53(55.8)	28(29.5)	95(100.0)
	Etc.	2(2.9)	63(90.0)	5(7.1)	70(100.0)	0(0.0)	8(11.6)	0(0.0)	41(59.4)	20(29.0)	69(100.0)
	$\chi^2$ (p-value*)		12.922(0.115)					25.060(0.069)			

\*by Fisher's exact chi-square statistics

Table 5. Necessity of medical law revision

Item	Mean±SD*
It will be important for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dental hygienist.	3.78±0.65
It will expand the scope of dental hygienists work.	4.06±0.74
The role and scope of dental hygienists will be protected from law.	4.11±0.70
It will help establishment of institution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	4.10±0.69
Law will regulate the education and practice of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s.	3.99±0.71
It will enhance the status of dental hygienists.	4.08±0.81

\*The highest score is 5 in a five-point Likert scale.

Table 6. Necessity for medical law revi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Opinion of medical law revision					
		1	2	3	4	5	6
Age(year)	≤25	3.81±0.65	4.14±0.68 <sup>b</sup>	4.23±0.65 <sup>b</sup>	4.19±0.64 <sup>b</sup>	4.07±0.66	4.21±0.75 <sup>b</sup>
	26-30	3.74±0.63	4.08±0.72 <sup>ab</sup>	4.05±0.72 <sup>ab</sup>	4.08±0.70 <sup>ab</sup>	3.96±0.73	4.09±0.80 <sup>ab</sup>
	31-35	3.81±0.69	3.91±0.83 <sup>a</sup>	4.01±0.71 <sup>a</sup>	4.09±0.71 <sup>ab</sup>	3.98±0.76	3.94±0.89 <sup>a</sup>
	36-40	3.69±0.72	3.93±0.84 <sup>a</sup>	4.01±0.81 <sup>a</sup>	3.89±0.77 <sup>a</sup>	3.86±0.79	3.90±0.90 <sup>a</sup>
	≥41	3.78±0.65	4.07±0.62 <sup>ab</sup>	4.14±0.51 <sup>ab</sup>	4.00±0.61 <sup>ab</sup>	3.93±0.62	4.00±0.64 <sup>ab</sup>
	F(p-value*)		0.914(0.455)	2.828(0.024)	3.590(0.007)	3.196(0.013)	1.536(0.190)
Working career	Under 3 years	3.82±0.64	4.14±0.70 <sup>b</sup>	4.22±0.64 <sup>b</sup>	4.19±0.64 <sup>b</sup>	4.08±0.67 <sup>b</sup>	4.23±0.74 <sup>c</sup>
	4-6 years	3.80±0.61	4.13±0.69 <sup>b</sup>	4.15±0.72 <sup>b</sup>	4.17±0.65 <sup>b</sup>	4.02±0.70 <sup>b</sup>	4.17±0.79 <sup>bc</sup>
	7-10 years	3.67±0.71	3.87±0.76 <sup>a</sup>	3.88±0.69 <sup>a</sup>	3.89±0.74 <sup>a</sup>	3.82±0.75 <sup>a</sup>	3.83±0.83 <sup>a</sup>
	11-15 years	3.83±0.60	3.98±0.80 <sup>ab</sup>	4.06±0.70 <sup>ab</sup>	4.10±0.66 <sup>b</sup>	4.00±0.67 <sup>ab</sup>	4.02±0.87 <sup>abc</sup>
	Over 16 years	3.78±0.74	4.11±0.77 <sup>b</sup>	4.16±0.76 <sup>b</sup>	4.03±0.77 <sup>ab</sup>	3.97±0.81 <sup>ab</sup>	3.97±0.85 <sup>ab</sup>
	F(p-value*)		1.623(0.166)	4.334(0.002)	6.875(<0.001)	6.033(<0.001)	3.865(0.004)
Marital status	Single	3.77±0.69	4.02±0.71	4.05±0.67	4.04±0.67	4.00±0.66	4.02±0.77
	Married	3.79±0.64	4.07±0.75	4.13±0.71	4.12±0.69	3.98±0.73	4.10±0.82
	t(p-value*)		-0.368(0.713)	-0.690(0.490)	-1.367(0.172)	-1.415(0.157)	0.346(0.729)
Academic Background	College	3.75±0.66	4.01±0.75 <sup>b</sup>	4.06±0.71 <sup>ab</sup>	4.07±0.69 <sup>b</sup>	3.94±0.72 <sup>ab</sup>	4.04±0.83 <sup>ab</sup>
	University	3.87±0.64	4.21±0.68 <sup>a</sup>	4.28±0.61 <sup>b</sup>	4.24±0.67 <sup>b</sup>	4.17±0.66 <sup>b</sup>	4.24±0.70 <sup>b</sup>
	≥Graduate school	3.83±0.57	4.17±0.71 <sup>a</sup>	3.92±0.98 <sup>a</sup>	3.67±0.65 <sup>a</sup>	3.67±0.65 <sup>a</sup>	3.67±0.77 <sup>a</sup>
F(p-value*)		2.205(0.111)	5.602(0.004)	7.468(0.001)	6.683(0.001)	8.184(<0.001)	5.556(0.004)
Working area	Seoul	3.78±0.65	4.04±0.74	4.10±0.68	4.10±0.69	4.01±0.68	4.09±0.80
	Gyeonggi	3.78±0.66	4.07±0.73	4.11±0.71	4.10±0.69	3.98±0.74	4.07±0.82
	t(p-value*)		-0.085(0.932)	-0.450(0.653)	-0.107(0.915)	-0.008(0.993)	0.540(0.590)
Type of work place	College dental hospital	3.87±0.66	4.24±0.66	4.24±0.69	4.25±0.67	4.20±0.62 <sup>ab</sup>	4.24±0.69
	Dental hospital	3.84±0.64	4.08±0.68	4.16±0.73	4.12±0.62	3.92±0.74 <sup>a</sup>	4.06±0.81
	Dental clinic	3.76±0.66	4.03±0.75	4.09±0.70	4.08±0.70	3.97±0.72 <sup>ab</sup>	4.07±0.82
	Etc.	4.00±0.47	4.26±0.56	4.26±0.56	4.21±0.53	4.26±0.56 <sup>b</sup>	4.00±0.66
	F(p-value*)		1.400(0.241)	1.821(0.142)	1.185(0.314)	1.269(0.284)	2.846(0.037)
Type of duty position	Prevention	3.77±0.60	4.01±0.74	4.04±0.71	4.08±0.71	3.98±0.67	4.14±0.82
	Patient care	3.66±0.73	4.01±0.72	4.07±0.67	4.05±0.63	3.93±0.70	4.00±0.79
	Care coordination	3.79±0.65	4.08±0.73	4.13±0.70	4.11±0.68	3.99±0.75	4.10±0.81
	Hospital management	3.80±0.67	4.00±0.79	4.12±0.76	4.10±0.73	4.06±0.67	4.02±0.80
	Etc.	3.89±0.62	4.17±0.72	4.17±0.63	4.14±0.70	4.01±0.71	4.07±0.82
F(p-value*)		1.402(0.231)	0.923(0.450)	0.631(0.640)	0.266(0.900)	0.472(0.756)	0.686(0.60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by t-test or one-way ANOVA

<sup>a,b,c</sup>denotes the same subgroup by Duncan multiple range test analysis

1. It will be heavier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dental hygienist
2. It will help expand dental hygienists work
3. The role and scope of dental hygienists are institutionalized will be able to receive legal protection
4. It will help establishment of institution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
5. Law will be able to regulate the education and practice of professional dental hygiene.
6. It will raise the status of dental hygienists.

## 총괄 및 고안

현대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는 과거 치료중심의 진료 전 달체계에서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예방중심으로 보건의료전

달체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 구강건강의 증진 및 향상을 위한 체계화된 치과의료 전달체계의 확립이 요구되어졌으며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치과의료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13].

국민의 구강보건은 치과위생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제 6항에 의거하여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口內)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으며, 치과위생사의 업무수행은 국가 인증 자격증인 면허증으로 인증되고 있다. 하지만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 임무인 구강병 예방치치와 구강보건교육보다 치과진료보조업무를 주로 하는 실정이다 [14,15].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향상을 위해 치과위생사의 구강병 예방치치와 구강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독립적 업무수행 및 보장된 업무범위의 현실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관련법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연령은 25세 이하가 34.1%, 임상 경력은 3년 이하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84.3%가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에 있어 국가통계포털(KOSIS)[4]의 결과 치과위생사 의료기관 종사자 83.1%가 치과의원에 근무 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의료기사법 인지정도에 있어 응답자 52.1%(415명)가 의료기사법 교육이수 여부가 ‘미이수’라고 응답하였으며, 의료기사법 내용인지에 있어서는 ‘보통이다’가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규 교과과정에서나 의료기사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있을 뿐 면허 취득 후에는 치과위생사 관련법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 관련법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업무 내용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의견에는 ‘그렇다’ 이상이 51.6%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다수의 치과위생사의 업무실태 및 업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16,17]. 치과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적 문제의 책임관계에 관해 ‘명확하지 못하다’가 59.3%로 이등[11]과 양 등[18]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이는 의료법정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의료법 개정 필요에 대한 의견은 92.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나라와의 동등한 법적체계 필요여부 역시 ‘필요하다’ 이상이 66.9%로 대부분의 치과위생사들이 치과위생사 관련법들의 개정 필요에 대해 높게 인지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치과위생사의 제도 마련 필요성 여부는 대상자의 85.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된 배[19]의 연구에서 연구설계 방법은 다르나, 전문치과위생사제도에 대한 고찰 결과 필요성에 대한 인지 부분이 높게 나타난 것과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직무능력 향상 및 심화를 위해 다수의 선행연구 [20,21]들이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성이 요구된다는 결과를 제시한 것과 같이 앞으로는 전문치과위생사제도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법 개정시 촉진요인으로는 ‘의료기사의 역할과 교육’이 60.6%로 가장 높았고, ‘의료법적 문제 해결’ 48.0%, ‘타 단체와의 협조’ 29.0%, ‘정치적 협상’ 17.4%, ‘국민적 합의’ 9.5%순으로 나타났는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10]에서 ‘정치적 협상’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간호사의 경우 특수성과 독자성을 위한 간호사 단독법 제정에 대한 정책연구로 간호법(안)을 작성하였고, 2002년에는 동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완성하는 등의 법률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연구들이 보고되었으며[22-24], 이를 기반으로 간호법 입법을 위한 제정 활동을 구체화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치과위생사와 처해 있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의견으로 치과위생사의 단합과 치과의사의 마인드 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법안의 구성과 법 제정의 당사자가 될 치과위생사, 치과의사의 의견의 중요함을 나타낸 것이다.

의료법 개정에 대한 견해로는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제도화되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가 4.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치위협보(2016.5.3.일자)에서 치과위생사의 실제 업무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애매하게 되어 있는 제한된 업무범위는 불필요한 직역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현실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의료법이 개정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으로서 치과위생사에 대한 명확한 업무범위 및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치과위생사의 인식 변화 및 치과위생사의 업무와 독립적인 업무권한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치위생계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대상으로 전국의 치과위생사들 중 일부 시도회 보수교육에 참석한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치과위생사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부 시도에 국한하기 보다는 전국단위의 표본 분석을 통해 실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치과위생사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으며, 2016년 상반기 보수교육에 참석한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797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25세 이하가 34.1%, 총 경력은 3년 이하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29.1세, 평균경력은 6.4년으로 나타났다. 주된 업무로는 진료협조가 44.5%로 가장 높았고, 예방업무 20.1%, 환자관리업무 13.8%, 병원경영관리업무 12.8%, 기타 8.8% 순이었다.
2. 의료기사법 교육이수 여부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2.1%, 의료기사법 내용 인지에 있어서는 '보통이다'가 56.2%로 가장 높았고, '모른다'는 27.3%로 나타났다.
3. 치위생 관련 의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는 92.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마련 필요성 여부도 85.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의료법 개정시 촉진요인으로는 '의료기사의 역할과 교육'이 60.6%로 가장 높았고, '의료법적 문제 해결' 48.0%, '타단체와의 협조' 29.0%, '정치적 협상' 17.4%, '국민적 합의' 9.5%순이었다.
4. 치위생 관련 의료법 개정 필요성 항목 중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제도화되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가 4.11점으로 가장 높았고, '치과위생사의 법적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다'가 3.78점으로 가장 낮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법 개정 필요성 정도는 25세 이하이거나 3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모든 항목에 있어 점수가 높았다.

치과위생사들의 의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요구정도와 필요성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독립적인 업무권한과 업무범위 확장을 위한 치위생계의 노력과 더불어 법적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동남보건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된 것임.

## References

1. Korea Laws. Medical Law[Internet]. [cited 2016 May 01].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main.html>.
2. Korea Laws. health&Medical Law[Internet]. [cited 2016 May 01].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main.html>.
3. Korea Laws. health&Medical Law. Medical Technicians [Internet]. [cited 2016 May 01].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main.html>.
4. Statistics Korea.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Statistics DB[Internet][cited 2016 May 01].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5. Kim SJ. A review on utilization of dental hygienist professionals[Master's thesis]. Seoul: Univ. of Chungang, 2013.
6. Lee SY. The present condition of supply and demand for health care resources and management policy implications.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3: 151-60.
7. Kim HN. Medical technologist law: law revision. Seoul: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3; 11(3): 91-6.
8. Lee JW, Park EG. A study on the existing law and direction for revision in the physical therapist. J Korean Med Sci 2010; 38: 393-412.
9. Park MS, Kim J, Kim HJ, Bae SM, Youn MS, Jang YJ, et al. Introduction to Dental Hygiene. 1st ed. Seoul: Daehannarae; 2016: 202-25.
10. Lee HJ, Kang HS. The perceptions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on nursing law legislation in Korea. J Adv Nurs 2006; 12(3): 355-64.
11. Lee SM, Lim MH, Han MS. The analysis on the perception of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of dental hygienist. J Dent Hyg Sci 2008; 8(4): 241-6.
12. Oh JH, Kwon JS, Ahn HJ, Kang JK, Choi JH.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counterplans of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of dental hygienist. J Oral Med Pain 2007; 32(1): 9-33.
13. Kim YJ, Han GS.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leadership, commitment, patient orientation, and job performance in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2015; 15(5): 551-9. <http://dx.doi.org/10.17135/jdhs.2015.15.5.551>.
14. Kim YS, Shin MW.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weight of dental hygienists' works. J Korean Soc Dent Hyg 2008; 8(3): 161-75.
15. Lee HJ, Kim SJ, Kim YS, Jeon JK, Chang KW. Relationship



- between job competency, core self-evaluation, and job performance in dental hygienist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3; 37(3): 161-6. <http://dx.doi.org/10.11149/jkaoh.2013.37.3.161>.
16. Yoo EM, Han HJ. A study on the work and turnover of clinical dental hygienist. *J Dent Hyg Sci* 2011; 11(1): 41-6.
  17. Moon HJ, Jang MH, Shin MS. A study on working environment of dental hygienists by their work division. *J Dent Hyg Sci* 2007; 7(1): 37-47.
  18. Yang EM, Park SJ, Kim HJ. The experience of medical conflict and the educational needs of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2015; 15(3): 361-8. <http://dx.doi.org/10.17135/jdhs.2015.15.3.361>.
  19. Bae SS. A basic study for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dental hygienist system around the duties of dental hygienist. *J Korean Soc Dent Hyg* 2007; 7(3): 301-16.
  20. Jeon HS, Ryu DY, Choi YK. Assessment of self-perception on dental hygiene professionalism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in associate degree and bachelor's degree program. *JKEIA* 2015; 9(2): 247-54.
  21. Lee SJ, Han GS. The ethical propensity, professionalism and ethical job behavior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2; 36(3): 238-48.
  22. Kim KK, Kim ES, Park SK. The comparative analysis on nurse's legal duty and their understanding of responsibility: based on precedents in nursing - related cases. *J Korean Med Sci* 1999; 6(1): 105-30.
  23. Kim, ES, Lee, HJ. Legal definition of nursing practice. *J Adv Nurs* 2006; 12(4): 574-86.
  24. Kim JH. A reasonable nursing resources reorganization plan through enactment of nurse act. *Ilkam Law Review* 2015; 32: 215-61.